

보도시점 2025. 12. 29.(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5. 12. 26.(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2월 30일 개정·시행,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핵심자원 수입시 보관기관 연장,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적 직매립 기준 마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되었다. 아울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석탄재만 매립하여 주변환경오염 우려가 낮아 일반 매립시설에 비해 설차·관리기준이 완화

다음으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관*, 폐전선 등 구리스 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인쇄회로기관은 전체 함유금속의 84.2% 이상이 구리, 알루미늄, 주석, 금, 은 등 핵심광물 함유

또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건설폐기물 '22.10, 사업장일반 폐기물 '24.10)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계량값, 위치정보 등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제한(전용차량의 2배 이내)을 풀어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지(電池)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하고,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차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의 집합체

그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였다.

*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난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44-201-73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권용락 | (044-201-7345) |
| 담당 부서 (매립장) (임시차량) | 폐자원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양동 | (044-201-73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동호 | (044-201-7365)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순미 | (044-201-7363) |
| 담당 부서 (수출입) | 생활폐기물과 | 책임자 | 과 장 | 안중기 | (044-201-7421)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우석 | (044-201-7427) |
| 담당 부서 (재 활용) | 자원재활용과 | 책임자 | 과 장 | 맹학균 | (044-201-738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종호 | (044-201-7393) |
| 담당 부서 (직매립) | 폐자원에너지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제훈 | (044-201-7400) |
| | | 담당자 | 사무관 | 문유상 | (044-201-7402) |
| 담당 부서 (전자류 분류체계) | 미래 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책임자 | 과 장 | 심은수 | (044-201-7417) |
| | | 담당자 | 사무관 | 남궁현 | (044-201-7384) |

| 연번 | 주요내용 | 조문번호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1건 |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매립시설(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을 사후관리 대상 제외 - 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제24조 제37조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19건 |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허용 추가 - 폐기물을 자가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 제10조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 동물성잔재물, 공공비축시설 등 보관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사업장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제11조 제31조 별표8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 확대 -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보관기간 확대(30일→180일) | 제31조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종료 매립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정비 -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시 이중규제(제47조에 따른 허가, 제71조의2에 따른신고)로 인한 혼란 우려로 허가 절차 폐지 | 제47조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및 절차 마련 - 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제69조 제69조의3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개편(7종 → 13종) - 폐전지류의 분류체계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 - 전구체·양극재 제조공정 부산물 등 고유가성 폐기물에 대한 분류번호 신설 | 별표4 별표4의3 등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분류번호 개선 - 동·식물성잔재물 발생원에 유통업 신설, 농산물 유통잔재물(과채류) 및 집단 급식소 등의 배식 전 식품 등 분류번호 신설 | 별표4 별표4의3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추가 - R-5-4유형에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로 자가 사육하는 가축 외에 양식 어류 추가 - R-9-1 유형에 폐기물을 무게기준으로 50%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내용 추가 | 별표4의2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제지 제조과정 발생 오니류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 추가 - 펄프·제지공정오니(51-01-05) 및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51-01-07)의 재활용 유형란에 R-6-2(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유형) 추가 | 별표4의3 |

| 연번 | 주요내용 | 조문번호 |
|----|---|-------|
| 11 | ○ 의료폐기물 처리기준·방법 등 개선 - 연휴기간 배출자의 보관기간 연장 | 별표5 |
| 12 | ○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제한 삭제 -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에 따라 부적정 처리 폐기물 관리 등을 이유로 도입된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 별표5 |
| 13 |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기준 마련 *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 별표5 |
| 14 |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유형 추가 - R-5-4 유형에 양식어류 먹이로 사용하는 내용 및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R-7-6 유형의에 농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이내의 오니를 일반토사 혼합 없이 재활용하는 내용을 추가 | 별표5의3 |
| 15 | ○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기준 현실화 - 압착·압축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개정 | 별표7 |
| 16 |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중 방전설비의 보유의무 완화 - 방전 완료된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의 경우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 제외 | 별표7 |
| 17 |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 예외 근거 마련 - 법적 제약사항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규정 합리화 | 별표9 |
| 18 | ○ 매립시설 관리기준 합리적 개선 - 예외적 매립시설(석탄재만 매립)의 최종복토 면제 | 별표11 |
| 19 |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추가 -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하도록 개정 | 별표16 |
| 20 | ○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처분 합리화 - 시멘트 보조연료와 대체연료 준수사항을 “중금속 함량기준”에서 “재활용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고품연료제품 품질기준 위반과 유사하게 1차 위반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완화 - 각 매체별(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등)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차수가 적용되도록 구분 | 별표21 |